「세로민국(世勞民國) 법전」제2문

제정 제1문: 2017.07.12

개정 제2문: 2018.03.03

제3문: ????.??.??

[개요]

I. 조문

Ⅱ. 헌법

Ⅲ. 민법

IV. 기타 법률

「Ⅰ. 조문 ェ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세로국민은 '저장하고 구하기' 운동으로 건립된 제4대 세로방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7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2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세로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Ⅱ. 헌법」

#제1조 (국가 정체성에 대한 조항)
① 세로민국은 민주공화적 채팅방이며, 민주국체(民主國體)이자 공화정체(共和政體) 적인 특성을 지닌다.
② 세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③ 세로민국의 국민들은 채팅 상 관례적인 방식의 계승·발전과 진취성 채팅의 발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 (국민의 주체성에 대한 조항)
① 세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세로 중앙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탈주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영토와 확장성에 대한 조항)
① 세로민국의 영토는 본 채팅방과 갠톡(개인톡)으로 준한다.
② 세로민국은 확장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확장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4조 (평화방위 및 안전성에 대한 조항)
① 세로민국은 카톡평화의 유지 에 노력하고 침략적 도배를 부인한다.
② 국군은 세로의 안전보장과 톡방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③ 세로회는 톡방 생존 인원(정족수) 1/3 이상의 국민이 참석시 개최 가능하며 참석 인원의 과반수의 투표를 얻을시 법을 개정할 수 있다.

#제5조 (국제법규의 지위성 및 효력에 대한 조항)

-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다.

#제6조 (부서 및 국가 운영체계에 대한 조항)

- ① 세로민국 내에서는 사법, 입법, 행정으로 부서를 구성하며 이를 토대로 한 삼권 분립을 기준원칙으로 삼는다. 위 세 부서는 서로의 부서를 견제하며 세로민국의 책임과 감수에 대한 각자의 의무를수행한다.
- ② 사법 부서의 대표는 김 서연 (이하 아레기)로 인지한다. 일반적으로 사법적 권한과 톡방 내 높은 비중을 가진 정신적 지주로써 국가에서 정의하여 규정될 수 있다.
- ③ 입법 부서의 대표는 김 지훈 (이하 디메인)으로 인지한다. 이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될 수 있다.
- ④ 행정 부서의 대표는 여 인혁 (이하 ATM)으로 인지한다. 일반적으로 '최대 후원자' 및 국민 전체 재정적 요인을 담당하는 총괄자로써 여겨지며, 국가에서 정의하는 공공인물로써 규정될 수 있다.
- ⑤ 기타 공공인물에 관한 신분성과 소지 및 소유 여부에 대하여서는 국가의 법률 상 외의 기타 자율적인 소견을 따르는 것이 우선된다.

#제7조 (국민의 보장성에 대한 조항)

① 세로민국 내에서의 모든 국민은 각자와 단체적인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다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없다.

② 모든 세로국민은 평등하며, 톡방 내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차이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Ⅲ. 형법 ١

#제1조 (기본 규칙에 대한 기준/처벌에 관한 조항)

- ① 세로국민 사이에 상해를 입힐경우, 즉시 추방처분에 가한다.
- ② 본 방 혹은 개인 톡방에 도배를 하여서 세로국민의 행복 추구권이 직접적으로 침해 당할시 경고처분을 내린다.
- ③ 지나친 욕설로 인하여 본 방의 분위기를 망칠시 경고 처분을 내린다.
- ④ 왕따나 따돌림 현상이 발생할 시, 가해자는 경고 2번을 처분 받으며, 따돌림을 받은 학생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여야 한다.
- ⑤ 경고가 누적 3번일시, 본 세로민국에서 추방당한다.
- ⑥ 19세 이용가 이상의 음란물 배포, 성희롱 등의 내용을 올릴 시 죄의 중경에 따라 최대 즉시 퇴출에서 최소 1번의 경고를 받게 된다.
- ⑦ 경고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이며, 이 시간이 지난 후 경고는 소멸한다.

- ⑧ 추방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이며, 이 이후에 다시 돌아오는것은 자유이다.
- ⑨ 추방 3번 누적시 세로민국 영구추방형에 처해지며, 곧 국민으로써의 주권을 회수당한다.
- ⑩ 이외에 기타적인 법률 안이나 즉각적인 처리분에 대해선 국민들의 투표로 정해질 수 있으며, 긴급상황이나 즉결 처분이 요할 땐 위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IV. 기타 법률」

#제1장 (암묵적인 상황에 관한 법률)

- ① 통상적이고 암묵적인 상황 내에서, 세로민국 내에서는 '정상인'으로써 존재받지 않을 수 있다.
- ② 특별한 사유를 말하지 않고 장시간 동안 사라졌을 시에는 '죽은 것'으로 간주한다. 장시간의 기준은 암묵적인 상황 내에서 유추될 수 있다.
- ③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깃거리는 특수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범용적인, 법률에 위반 되지 않는 한 어느 것도 가능하다. 곧 특별한 주제가 없을 수 있고, 아무 말이 펼쳐 질 가능성도 보장한다.
- ④ 세로민국 내의 톡이나 사진 등으로 인한 개개인적인 데이터, 시간, 어휘력 사용은 **개개인의 의사**에 달려있으며, 이 각각에 대한 모든 관리는 국민 각각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주민등록에 관한 법률)

① 세로국민의 희망자는 무작위의 세로국민에게 신청함을 통해 '톡방 생존 인원(정족수) 과반수이상의 국민'에게 동의를 받아 가입 절차를 이행할 수 있으며, 동의의 조건은 국민들의 상황에 따라조정될 수 있다.

② 세로국민은 개인사정에 의한 탈퇴의 권리를 가진다. 재가입을 원한다면 탈퇴 후 6개월 이내에 무작위의 세로국민에게 신청함을 통해 동의를 받아 다시 재가입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